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13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08,986,540원, 지방교육세 101,211,520원, 농어촌특별세 50,605,760원 합계 1,360,80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 제2항에 따른 [redacted]장관의 매입요청에 의하여, 2011. 12. 28. 대한민국(소관 법무부, 위임관리청 법무연수원)과 사이에 [redacted]으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349-1 외 68필지 토지 386,087㎡ 및 그 지상 건축물 20개동(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3,903,258,74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16,390,327,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회차	지급약정일	지급금액	비고
1	2011. 12. 28.	55,022,324,600원	33.57%
2	2012. 10. 1.	26,929,305,400원	16.43%
3	**2013. 10. 1.**	**65,561,301,445원**	**40.00%**

나.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2012. 1. 17. 계약보증금 및 1회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redacted]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2. 10. 30. 2회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법무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이 위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약정일인 2013.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1. 이후인 2015. 5.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2013. 6. 28. 대한민국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의 3회차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차	지급약정일	지급금액	비고
1	2011. 12. 28.	55,022,324,600원	33.57%
2	2012. 10. 1.	26,929,305,400원	16.43%
3	2013. 10. 1.	16,390,327,300원	10.00%
4	2014. 6. 3.	32,780,651,740원	20.00%
5	2015. 2. 3.	16,390,322,405원	10.00%

라. 원고는 2013. 11. 20. 3회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취득세 163,903,270원, 지방교육세 16,390,320원, 농어촌특별세 8,195,160원 합계 188,488,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2차 매매계약일(2013. 6. 28.)에 종전에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1, 2회차 매매대금(이하 이를 통틀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원고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개정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 및 용역수수료 등을 합산한 합계 98,435,641,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100분의 75를 감면한 취득세 1,799,600,390원(가산세 815,243,980 포함), 지방교육세 101,211,5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원(가산세 2,755,8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05,760원(가산세 1,387,940원 포함) 합계 1,951,417,6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6.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31. 기각되었고, 2014. 6. 24.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12. 16. 피고의 위 마.항 기재 부과처분 중 취득세의 75%를 감면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바.항 기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15. 12. 29.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 중 590,613,85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감액결의 후의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정 전 법 제76조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각 지급일인 2011. 12. 28. 및 2012. 10. 1.에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외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7-5 3호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2차 매매계약일에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지방세 납부의무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쟁점금액은 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개정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법 제7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미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1. 29.에 이르러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정 법 제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개정 법 부칙 제6조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3호는 '일시취득 조건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각 지급일인 2011. 12. 28. 및 2012. 10. 1.에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1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전제가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3호를 참작하여 연부계약이 아니었던 1차 매매계약이 그 체결 이후 대금지급방법이 변경되어 2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차 매매계약일에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쟁점금액에 대한 종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은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한데,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감면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④ 만약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지 않았고 1차 매매계약이 이후 변경되지 아니하고 유지된 경우, 또는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지 않았고 1차 매매계약이 이후 연부계약에 해당하는 2차 매매계약으로 변경된 경우를 가정하여 보았을 때, 위 경우 모두 원고는 개정 전 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가정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원고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2차 매매계약일인 2013. 6. 28.에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각 지급일인 2011. 12. 28. 및 2012. 10. 1.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개정 법의 시행 전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김영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판사 민경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 개정된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부칙 <제11618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 개정된 것)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끝.